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5. 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어르신장애인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어르신장애인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

- 노인복지관이 없는 월배권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·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복지관 접근성 제고 및 권역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활기차고 당당한 노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 제5호를 “월배노인종합복지관: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(진천동)”으로 신설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. 12. 11일부터 12.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5. 1. 14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맞춤형 건강·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5007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1. 23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어르신장애인과장)

1. 제안이유

-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·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명칭 및 위치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: 202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반영예정
- 다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4. 12. 11.~12. 31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2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 - 3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동의
 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 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월배노인종합복지관: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(진천동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 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월배노인종합복지관: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21길 77(진천동)</u></p>

【관계법령】

□ 노인복지법

-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-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기 간: 2025년 7월부터 연중
- 주요내용: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·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

2. 비용발생 요인

-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

3. 관련조문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: 2025년부터 추진할 사업(5년)에 대한 비용 추계
- 나. 추계의 결과: 4,084,308천원
- 다. 재원조달방안: 시, 구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: 붙임

6. 작성자 : 어르신장애인과장 김 수 미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비 고
세 입						
수강료 및 식권수입 등						전액 사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
세 출	432,117	888,661	904,926	920,821	937,783	
복지관 인건비, 운영비 등	432,117	888,661	904,926	920,821	937,783	인건비 등 물가상승률 3% 반영
재원 조달	432,117	888,661	904,926	920,821	937,783	
소계	432,117	888,661	904,926	920,821	937,783	
시비	233,980	481,999	480,043	488,938	498,049	
구비	198,137	406,662	424,883	431,883	439,734	

※ 2025. 7월말 준공 예정으로 1차년도(2025년) 비용은 2025. 7.~12월분 반영